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일, 소병훈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 8.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소위 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 11.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 11. 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으로 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만으로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제공되는 활동이라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준비서비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에 걸쳐 제공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명시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에 대한 지원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개정 취지와 달리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영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해석상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문화적 영역 등 그밖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의 조항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으로 수정하고 지원 계획에 있어서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노후준비서비스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수정하고,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수정된 노후준비서비스가 적용되도록 수정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비용추계서

없음

9.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서비스를 문화적 영역 등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하여 제공하려는 개정 취지가 반영되도록 모든 영역에서 제공됨을 명확히 하고, 지원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도 이처럼 모든 영역을 포괄하려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5조).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제2호 중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모든 영역”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제3호 중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을 “모든 영역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노후준비서비스”란 <u>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u>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u>인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u>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u>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u>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u>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u>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u>영역별 노후준비 지원</u> ----- -----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1.·2. (현행과 같음) 3. ----- ----- 모든 <u>영역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u>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를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을 “모든 영역별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노후준비서비스”란 <u>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u>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u>개인</u> <u>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u>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u>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u> 4. (생략) ③ ~ ⑤ (생략)	제5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 <u>모든 영역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u> ----- -----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